검토사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고용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⑦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또는 부담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예 아니요 감면율 ① 청년 15세 이상 29\* 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병역이행시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감면율 100% 예 아니요 ② 경력단절 여성 해당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3년(’22.1.1. 고용부터 2년)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율 100% ③ 신성장 서비스업 조특령§27의4⑤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감면율 75% ④ 이 외 상시근로자 ①, ②, ③외 상시 근로자인 경우 감면율 50%